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34
------	------

제출일자 : 2023. 5. 31.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갑상선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갑상선 기능검사(TFT : Thyroid Function Test)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갑상선 기능검사를 검사항목에 추가하고, 그 밖의 각종 검사와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항목 삭제(안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 삭제, 별표)
- 갑상선 기능검사 항목 추가 및 수가 규정 변경(안 별표)
- 수수료 및 진료비, 검사 관련 항목 일부 삭제·현행화(안 제3조제2항제7호, 제5조, 별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예산조치: 갑상선기능검사 실시를 위한 검사 시약 구입 예산 확보  
필요. 2023년 추경예산 편성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4. 26. ~ 2023. 5. 16.) 결과: 별도의견 없음
- 2)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별첨
- 4)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고엽제휴유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골밀도검사, 동맥경화검사”를 “골밀도검사”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위생분야종사자”를 “식품위생분야종사자”로 하고, 같은 란 제1호다.의 금액란 중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8조”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별표 제2호 항결핵제보급란을 삭제한다.

별표 제4호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검사	가. 일반건강검진	1회	6,500원
	나. 체력측정검사	1회	각각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
	다. B형간염검사	1회	대까지 잠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라. C형간염검사	1회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의 과방문당 진료비

미: 끝말도검사	1회		〈삭제〉 ※ 끝말도검사 간접의뢰는 관 내 의료기관에 한한다.
바: A형간염검사	1회	17,000원	
사: 갑상선기능검사	1회	15,000원	
아: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 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 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p> <p>1. (생략)</p> <p>2. <u>항결핵제 보급</u></p> <p>3. ~ 6. (생략)</p>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6의2. (생략)</p> <p>7.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u>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u>,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와 <u>골밀도검사</u>, <u>동맥경화검사</u>의 수수료 ,</p> <p>8.·9. (생략)</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6의2. (현행과 같음)</p> <p>7. ----- ----- ----- ----- <u>고엽제후유증</u> ----- ----- ----- ----- <u>골밀도검사</u> ----- -----</p> <p>8.·9. (현행과 같음)</p>
<p>제4조(세입 재활용) ① <u>항결핵제</u></p>	<p><u>&lt;삭 제&gt;</u></p>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의 각호의 결핵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결핵관리 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 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결핵 관리요원의 시상금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 사업비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하며,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 관련)

1.	가. 알선전단	1통	500원	
간장	서			
간단	나. 사체검안	1통	5,000원	
결과	서			
서	다. 위생분야	1통	위생분야종사자의	간장간단결과서
및	종사자 간장		간장간단규칙 제8조에서	와 간장간단서를
간단	간단결과서		규정한 수수료액	동시에 발급할
서,	또는 간장진			경우 수수료는
재증	단서			'다항에' 미항을
명				대한 수수료액으로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 관련)

1.	가. 알선전단	1통	500원	
간장	서			
간단	나. 사체검안	1통	5,000원	
결과	서			
서	다. 식품위생	1통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간장간단결과서
및	분야종사자		간장간단규칙 제6조에서	와 간장간단서를
간단	간장간단결		규정한 수수료액	동시에 발급할
서,	과서 또는 건			경우 수수료는
재증	장간단서			'다항에' 미항을
명				대한 수수료액으로

	라. 사망진단서	1통	500원	로 한다.		라. 사망진단서	1통	500원	로 한다.	
	마. 가타사실 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마. 가타사실 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2.	가. 초치료처 항 방 결핵 제 나. 재치료처 보급 방	1인1 개월 분 1인1 개월 분	2,000원   2,000원			<삭제>				
4.	가. 일반건강 검사 나. 체력측정 검사 다. B형간염 검사 라. C형간염 검사 마. 골밀도검 사 바. 동맥경화 검사 사. A형간염 검사 아. 수질검사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6,500원  각각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까지 접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 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1부위 추가 촬영 시 3,000원 추가 ※ 골밀도검사 긴 급의뢰는 관내 의 료기관에 한한다.		4.	가. 일반건강 검사 나. 체력측정 검사 다. B형간염 검사 라. C형간염 검사 마. 골밀도검 사 바. A형간염 검사 사. 갑상선기 능검사 아. 수질검사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6,500원  각각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까지 접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 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삭제> ※ 골밀도검사 긴 급의뢰는 관내 의 료기관에 한한다.
	아.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거에 준한다.	인·허가용이아 닌 것에 한한다.		아.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거에 준한다.	인·허가용이아 닌 것에 한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갑상선 기능검사 개시·운영을 위한 해당 검사시약 등 구매비용 약 700만원 소요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연간 해당검사 진행을 위한 검사시약 예산이 필요하나, 검사시약은 그 가격이 연평균 1천만원 이하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양민화
연 락 처	2627 - 2615



#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9. 27., 2011. 5. 13., 2016. 5. 10.>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 11. 24., 2011. 5. 13., 2016. 5. 10.>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개정 2000. 11. 24.>
2. 항 결핵제 보급
3. 유료접종
4. 검사
5. 삭제 <2011. 5. 13.>
6. 의과 진료비 <신설 2005. 12. 28.>
7. 삭제 <2006. 12. 29.>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게는 제2조제2항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7. 9. 27., 2005. 12. 28., 2011. 5. 13., 2016. 5.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 등 응급환자의 이송 및 1차 진료 <개정 2011. 5. 13.>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1. 5. 13.>
3. 저소득층 주민, 노인정 등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이재민 집단보호소 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금천구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공적행사 시 의료지원
- 6의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만 해당한다.) <신설 2011. 5. 13.>, <개정 2016. 5. 10.>
7.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와 골밀도검사, 동맥경화검사의 수수료 <신설 2006. 12. 29.>, <개정 2011. 5. 13., 2019. 7. 1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20. 9. 18.>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20. 9. 18.>

③ 삭제 <2016. 5. 10.>

**제4조(세입 재활용)** ①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의 각호의 결핵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결핵관리 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 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결핵 관리요원의 시상금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 사업비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하며,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123호, 2020.9.18)(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97. 5. 21, '98. 5. 21, '99. 11. 15, 2000. 11. 24, 2005.12.28, 2006.12.29, 2007.09.27., 2011.05.13., 2019.10.10.>

###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 관련)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 증명	가. 일반진단서	1통	500원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다' 항에 '마' 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나.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다.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1통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라. 사망진단서	1통	500원	
	마.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바.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사. 1통초과 발급	1통	300원	
2. 항 결핵 제 보급	가. 초치료처방	1인 1개월분	2,000원	
	나. 재치료처방	1인 1개월분	2,000원	
3. 유료접종	가. 간염 나. 유행성출혈열 다. 장티푸스 라. 인플루엔자	보건복지부 표준예방지침에 따른다.	보건소의 유료 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 입가격으로 한 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 는 절사하고 5	제 증명 전자 추가 발급시 무료단, 등록결핵환자는 무료

			0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4. 검사	가. 일반건강검진 나. 체력측정검사 다. B형간염검사 라. C형간염검사 마. 골밀도검사 바. 동맥경화검사  사. A형간염검사 아. 수질검사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6,500원 각각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보 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요 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 건복지부 고시 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 료비 17,000원 서울특별시 보 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 한다.	1부위 추가 촬 영시 3,000원 추가 ※ 골밀도검사 건 급의되는 관내 의 료기관에 한한다.  인·허가용이 아 닌 것에 한한다.
5. 삭제				
6. 의과 진료비	항말라리아약제 예방적 투 여를 위한 처방전 교부	1회	건강보험요양 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에 관한 보건복 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 역에 관한 보건 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 과 방문당 진료 비	
7. 삭제				

#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1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3.] [보건복지부령 제667호, 2019. 8. 19., 일부개정]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